#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 책 요 구

제 목 공사계약업무 부당처리 등 성실의무 위반

소 관 기 관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조 치 기 관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

③ 계 대 상 자 ① 내팀 차장 B(생년월일: 1900. 00. 00.)

내 용

#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이하 "예단연"이라 한다)는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인 '공연연습장 옥상정원 방부목 교체 사업(이하 "방부목 교체공사"라 한다)'을 2021. 11. 5. 조달입찰(지역제한경쟁)로 공고하여 시공업체로 최종 선정된 ㈜내내 (대표: P)과 2021. 12. 7. [표 1]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2. 29. 방부목 교체공사 준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 1] 공연연습장 옥상정원 방부목 교체 사업 공사계약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공 사 명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옥상 방부목 교체 등 개선 공사		
계약금액	금 일억일천구백구십팔만삼천칠백칠십육원정(₩119,983,776)		
계약기간	2021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기타사항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관계법령 준수		

자료: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예단연은 방부목 교체공사가 [표 2]와 같이 계약기간 종료 후 2022.

1. 26.(수)까지 총 14회에 걸쳐 계속 작업이 진행되는 등 공사가 실제 완료되지 않은 상태<sup>1)</sup>임에도 허위로 준공처리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관리 감독 및 계약 관련 정산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계약기간 종료 후, 방부목 교체공사 작업현황

연번	일자	업무내용	인원	작업시간
1	2022. 1. 3.(월)		3명	07:30~17:30
2	2022. 1. 4.(화)		3명	07:30~16:50
3	2022. 1. 5.(수)		3명	07:40~17:05
4	2022. 1. 6.(목)		7명	07:25~17:30
5	2022. 1. 7.(금)		2명	08:55~11:00
6	2022. 1. 8.(토)		3명	07:30~17:30
7	2022. 1. 9.(일)	옥상 방부목	3명	07:20~18:00
8	2022. 1.10.(월)	교체공사	3명	08:05~17:00
9	2022. 1.14.(금)		2명	08:40~17:20
10	2022. 1.15.(토)		3명	07:20~16:00
11	2022. 1.16.(일)		4명	07:30~16:45
12	2022. 1.17.(월)		2명	08:20~17:20
13	2022. 1.23.(일)		3명	13:30~16:00
14	2022. 1.26.(수)		3명	12:00~17:15

자료: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회계규정」제3조(회계연도) 및 제4조(회계책임자)에 따르면 예단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책임자는 '한국장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44조(계약의 내용)2)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과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예산회계규정」제53조(검수)3), 제54조

<sup>1) 4</sup> 날씨 때문에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22, 1월말경 공사가 마무리됨(대반장 L)

<sup>↑ &#</sup>x27;22. 1월경 옥상 방부목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수 목격함(라팀 M)

<sup>▲</sup>원청업체(따마)로부터 설 연휴('22.2.1.)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진술(개가 대표 K/통화녹취)

<sup>2) 「</sup>예산회계규정」제44조(계약의 내용) 계약의 목적, 방법, 내용, 청약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sup>3) 「</sup>예산회계규정」제53조(검수) ① 공사나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나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을 완납하였을 때에 담당검수자로 하여금 검수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기성부분 또는 물품의 기납분에 대하여 완성 시 또는 완납 시에 대가를 지급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③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를 할 수 없을

(검수조서의 작성)<sup>4)</sup>, 제55조(대가지불의 시기)<sup>5)</sup>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 제2항<sup>6)</sup>에 따르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서류(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 확인 등을 포함한 검수가 완료된 후에 대가를 지불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7) 및 입찰 공고 문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8),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9) 및 입찰 공고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관련 경비를 계상하고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회계규정」과 국가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사관리 및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때에는 검수자 이외의 자 또는 검수 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sup>4) 「</sup>예산회계규정」제54조(검수조서 작성)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검수자 또는 검수기관은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sup>5) 「</sup>예산회계규정」제55조(대가지불의 시기) 공사 또는 제조, 물품 구입 및 용역의 대가는 제54조에 의한 검수가 완료된 후 지급한다.

<sup>6) 「(</sup>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검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sup>7) 「</sup>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sup>1.</sup>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sup>2.</sup>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sup>8) 「(</sup>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 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

<sup>9) 「(</sup>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sup>1.</sup>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sup>2.</sup> 전회분 기성대기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B의 경우

예단연 ' 모 대팀 차장 B<sup>10)</sup>(이하 "B"라 한다)는 2019. 10. 21.부터 2022. 11. 21.까지 계약, 복무 및 공연연습장 관리(공간운영, 대관 등) 등의 업무를 담당<sup>11)</sup>하였으며, 2021. 12. 1.부터 2022. 8. 7.까지는 공사업무 및 안전관리 업무<sup>12)</sup>를 함께 담당하여, 방부목 교체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실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B는 2021. 12. 27. 방부목 교체공사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대 제출한 준공서류(현장사진 포함)를 통해 공사가 미완료된 사항과 겨울철 한파와 눈 등으로 인해 공사 시행과 중단이 반복되어 방부목 교체공사가 여전히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2021. 12. 28. 한국장 C(이하 "C"라 한다)가 의뢰13)한 외부인(예술의전당 때부장 D)에게 현장 시공상태에 대한 검수만을 받은후,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1. 12. 29. 방부목 교체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여 공사대금 119,983,776원을 전액 지급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B는 방부목 교체공사의 실제 시공업체는 계약업체인 ㈜내대이 아닌 개가(대표: K)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공사작업일지를 통해 보고<sup>14)</sup> 받아 알고 있었으나,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sup>10) 2016. 4. 1.</sup> 예단연 입사

<sup>11)</sup> 감사일 현재는 예산, 국회, 인사복무, 회계결산, 물품 및 지출책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및 공사관련 업무는 2022. 8. 8. 입사한 권기운 관리팀장이 담당하고 있음

<sup>12) 2021. 11. 30.</sup> 전 관리팀장 O의 퇴사로 업무대행

<sup>13) ·</sup> 시설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예술의전당 D 부장에게 검수를 의뢰하여 진행한 것임(C 문답서)

<sup>▲</sup> 국장이 시설분야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보니 외부인에게 의뢰하라고 하였음(B 문답서)

<sup>·</sup> C 국장이 옥상 방부목 공사 완료에 대한 검수를 요청하였음(예술의전당 때부장 D 확인서)

<sup>14)</sup> 예단연의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공사작업일지를 일일보고하고 있으며, 예단연의 B는 이를 전자문서로 결재처리 하고 있음

또한 B는 입찰공고문 및 관계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관련 경비는 준공 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sup>15)</sup> 있었으나, 사후정산 항목 11,062,922원<sup>16)</sup>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및 사후정산을 위한 세부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B는 방부목 교체공사 준공을 허위로 처리하고 공사 관리감독 및 계약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계질서를 훼손하였다.

#### 나. C의 경우

 구 분
 직 위
 성명
 업 무 내 용

 가국
 국 장
 C
 이 가국 업무 총괄

 이 계약책임자(계약업무 전반), 인감 및 직인 관리업무이 관리팀 업무 관련 계약이 수반되는 업무이 관리팀 업무 관련 계약이 수반되는 업무이 가매 및 계약 담당 업무이 공사(건축, 전기, 기계, 영선) 업무이 공사(건축, 전기, 기계, 영선) 업무

[표 3] 방부목 교체공사 관련 업무분장 내역

자료: 국립예술단체연합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C는 방부목 교체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2021. 12. 27. ㈜마마로부터 준공서류가 제출되자, 예술의전당 매장 D에게 직접 연락후 공사 현장 검수자로 선정하여 2021. 12. 28. 시공상태에 대한 검수처리<sup>19)</sup>를 하도록 하고 2021. 12. 29.

<sup>15)</sup> 직접 작성한 공고문이라서 사후 정산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정산처리를 한 적이 없음(B 문답서)

<sup>16)</sup> 산재보험료 862,975원, 고용보험료 235,569원, 건강보험료 802,297원, 연금보험료 1,052,57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2,424원, 퇴직공제부금비 537,98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9,589원, 환경보전비 87,036원, 폐기물처리비 6,472,472원

<sup>17) 2019. 7. 12.</sup> 예단연 개국장으로 입사

<sup>18) 🏿</sup> 국 업무분장(2021.12.6. 시행)에 따르면 '관리팀 업무 관련 계약이 수반되는 업무'의 담당자로 분장되어 있음

공사대금을 지급20)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또한 C는 B를 믿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부목 교체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채 미완료된 공사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계약업체와 실제 시공업체가 달랐던 사항을 방치하는 등 계약책임자이자 업무담당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그 결과 "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B는 방부목 교체공사가 미완료된 것을 알면서도 준공처리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규정과 다르게 공사 관련 경비 정산을 하지 않는 등 공사 감 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시공업체와 계약업체가 달 랐던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실제 시공업체명과 작업자 이름이 표기된 공사작업일지를 매일 보고받고 이를 전자문서로 결재한 점을 고려할 때,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C는 방부목 교체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하도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를 믿고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그냥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B를 비롯한 직원들의 진술과 공사작업일지를 통해 방부목 교체 공사가 계약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변명으

<sup>19)</sup> 현장에서 예단연 직원(가국장인지 팀장인지 정확하게 기억안남)이 "며칠 내로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마감이 미흡(나사못 작업을 촘촘히 추가할 것)한 것만 지적함(D 확인서)

<sup>20)</sup> 예단연-2943(2021.12.29.)호

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② 본인이 계약책임자이자 업무담당자인 점을 고려할 때 C의 주장은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책요구 양정 방부목 교체공사 업무를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예산회계규정」과 다르게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업무를 태만히한 B와 C의 행위는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취업규정」제6조(신의성실)을 위배한 것으로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상벌규정」제7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장은 방부목 교체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와 C를 사단법인 국립예술단체연합회「상벌규정」제11조(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처분하시기 바랍니다.(문책)